

장수군 공고 제2024-463호

2024년 장수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공고

장수군에서 2024년도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에 대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4.

장 수 군 수



1.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개요

- 신청기간 : 2024. 4. 15.(월) 09:00 ~ 12. 6.(금) 18:00
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
 - 지원대수 : 무공해건설기계 1대
 - 신청대상 : 개인, 법인, 공공기관 등 1인당 1대
 - 지원금액 : 1대당 최대 20백만원(차량규모에 따라 차등지급)
 - 지원차종 :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무공해건설기계
 - 충전된 배터리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
 - 「건설기계관리법»,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», 「농업기계 화촉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·신고, 점정 및 안전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무공해건설기계
- ※ 차종에 대한 재원 및 성능에 관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
※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 게재

| 수입·제작사 | 기종 | 배터리 용량 (kWh) | 정격출력 (kW) | 총중량 (톤) | 보조금 (만원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HR E&I ((구) 호룡) | iX10e | 13.0 | 6.8 | 0.996 | 1,090 |
| | iX12e | 20.0 | 6.8 | 1.375 | 1,440 |
| | iX17e_A1 | 30.0 | 27 | 1.88 | 2,000 |
| | iX17e | 30.0 | 27 | 1.96 | 2,000 |
| | iX35e | 40.0 | 27 | 3.95 | 2,000 |
| 이스쿠스 | DaVinci10 | 8.0 | 19.7 | 0.997 | 940 |
| 불보건설기계 | JECR25D | 20.0 | 14.8 | 2.66 | 1,720 |
| HD현대 인프라코어 | DX20ZE | 20.4 | 6 | 1.89 | 1,590 |

2.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

○ 신청대상

-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지원 신청일이전부터 30일이상 연속하여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) 이상 개인, 법인, 공공기관 등

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

- 제외대상 : 무공해건설기계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또는 수입, 연구기관이 시험·연구 목적 구매

○ 신청자격(필수조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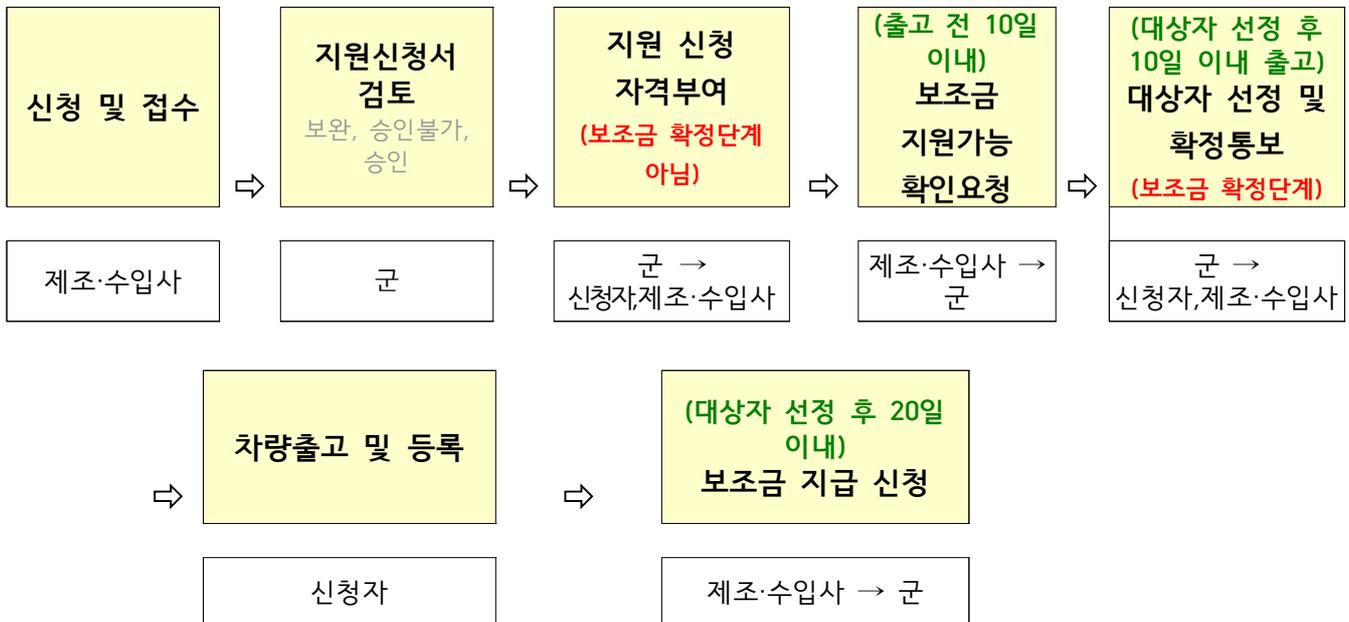
-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무공해건설기계 제조·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

※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무공해건설기계

※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

- ※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(대상자 확정) 10일 이내에 출고, 출고후 10일 이내에 사용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, 보조금 대상자 확정 취소 및 후순위자로 변경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,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,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·서명한 자
- 차량등록시 ‘사용본거지 주소’ 및 ‘주소’ 를 ‘장수군’ 으로 등록
- ※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‘장수군 주소’ 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(단, 최종 선정일까지 체납액 납부 시 인정)

3.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



○ 신청방법

-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무공해건설기계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, 계약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·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·접수하여 판매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(www.ev.or.kr/ps)을 통해 관련서류 접수[방문접수 불가]

가. 선정방법 :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**출고·등록순**으로 선정

- ① (자격부여)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을 통해 제출서류 접수순으로 확인 후 결격사유 없으면 자격부여 신청순으로 구매지원 신청자격 부여하고 구매신청자 및 제작·수입사 안내

※ '보조금 지원신청 자격' 부여는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단계
(자격부여 상태에서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)

※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·수입사에 문의

- ② (지원확인) 무공해건설기계 제조·수입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,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(지원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요청)

※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하여, 여러대가 보조금 지원확인요청이 되면 접수순으로 확정

※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또는 대기자 변경

- ③ (지원확정)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장수군에서 구매신청자 및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로 **보조금지원확정 통보(대상자 선정) 후 10일 이내 출고, 20일 이내 보조금 신청**

※ 10일 이내 출고 증빙자료(세금계산서 등) 미제출 시 별도통보없이 자격박탈 (다만, 출고기한 일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지난 다음날로 기한 연장처리함)

나. 신청서류

- **공통서류* + 추가 서류(사업자등록증, 증명서 등)**

- *공통서류 : 차량구매계약서 [출고예정일자(2개월내) 표시],
[별지 1호 서식] ~ [별지 4호 서식], 초본**

**주민등록초본 : 공고일 이후 발급(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)

- 추가 서류(해당시 제출)
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
- 법인 :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
4. 보조금 지급(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)

가. 지급신청 : 차량 출고·등록 완료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·수입사에서 진행

- 제출서류 : 건설기계등록증, 제작사 사업자 등록증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, 세금계산서 등 구입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[별지 5호 서식] ~ [별지 7호 서식]

※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·수입사로 구매 보조금(추가 보조금 포함) 지급

5. 신청시 유의사항

-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,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(국비, 지방비, 이자)을 환수함
※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수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- ②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(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·제출)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[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제한]
-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차종(차명 포함)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.
- ④ 취약계층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상이·독립유공자, 소상공인

등)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,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필요

- ⑤ 취약계층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), 상이유공자, 독립유공자, 다자녀,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(경유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자) 구매자 등에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
- ⑥ ‘24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

< 보완요청 안내 >

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(구매자 정보, 보조금액, 첨부파일 등) 보완 필요시 장수군에서 차량 제작·수입사로 보완요청

※ 차량 제작·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(1차 7일, 2차 7일)이내 보완해야 하며,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(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장수군에서 책임지지 않음)

6. 의무운행 기간

-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(수출 5년)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
- ②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및 폐차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필요
 -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
 - 다만,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(차량 보상금에 한함)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, 운행기간에 따라 <표1>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(국비+지방비)을 환수

<표1,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(%)>

1.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

| 사용기간 |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|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|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|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환수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

2. 그 밖의 경우

| 사용기간 | 3개월 미만 |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|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|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|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환수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

7. 기타사항

-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「2024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환경부)」 및 장수군 결정에 따름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(1661-0970) 또는 장수군 환경위생과(☎063-350-2547)로 문의

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

-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,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.
 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 -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
 -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로 교환한 경우
-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, 미이행 시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.

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장수군수 귀하

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「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」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(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, 그 외에는 2년)을 준수하여야 함.(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,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)
-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·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(지자체)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5년(수출) 혹은 2년(그 외) 이내 말소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
-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(지자체)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

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·동의하였으며,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장수군수 귀하

**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
(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)**

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·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장수군수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보조금 교부 신청서

- 사업명 : 2024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
- 신청자
가. 기관명 :
나. 대표자 :
다. 주소 : 전북 장수군 읍.면
-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가. 목적 :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실천하는 무공해건설기계 보급함
나. 사업내용 : 무공해건설기계 구매
- 사업기간 : 2024. . ~ 2024. . 까지
-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
○ 보조금 신청액 : 금 원

| 사업명 | 사업량 | 사업비 (단위:천원)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| | 계 | 보조 | 자담 | |
| 2024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| 1 대 | | | - | |

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주소 : 장수군 읍.면
대표 :
예금계좌 : 차량 출고 전 가상계좌 부여

장수군수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청렴 이행 서약서

2024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

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수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장수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수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 ~ 제40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~39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(법 제37조~제39조)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2024. . .

신청자(보조사업자)

(인 또는 서명)

[별지 제5호 서식]

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
지방보조사업자

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성명 | 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 | 소재지 | 전화번호 |
| | | 장수군 | |

신청 지방보조사업

(단위 : 천원)

| 보조사업명 | 총사업비 | | | 사업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계 | 보조금 | 자부담 | |
| 2024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| | | - | 2024. . . ~ 2024. . . |

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| 연도별 |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| 보조사업명 | 보조액 | 정산 반납액 |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해당사항없음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.

2024. . .

신청자(보조사업자)

(인 또는 서명)

[별지 제6호 서식]

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서

1. 사업명 : 2024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

2. 신청자

가. 기관명 :

나. 대표자 :

다. 주소 : 장수군 읍.면

3.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
가. 목적 :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실천하는
무공해건설기계를 보급함

나. 사업내용 : 무공해건설기계 구매

4. 사업기간 : 2024. . ~ 2024. . 까지

5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

○ 보조금 신청액 : 금 원

| 사업명 | 사업량 | 사업비 (단위:원)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| | 계 | 보조 | 자담 | |
| 2024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| 1 대 | | | - | 차량등록일 붙임 참조 |

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주소 : 장수군

장수군수 귀하

